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부

심 판

사 건 2012느합0 과거양육비상환
청 구 인 000 (39년생 여자)
상 대 방 000 (31년생 남자)
사 건 본 인 000 (64년생 남자)
주소 및 등록기준지 청구인과 같다.

주 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심 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1961.경부터 상대방과 3년간 동거하면서 1964. 9월경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나. 청구인은 상대방의 부친의 반대로 상대방과의 사실혼관계를 정리하고 사건본인을 혼자서 양육하였다.

다. 사건본인은 상대방의 아들이었으나 상대방의 호적에 입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내다가 2004.경 상대방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4드단00000호로 자신이 상대방의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0. 27. 대법원 2006므00000호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소갑 1호증의 1, 2, 소갑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2. 판단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

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 들어
켜 보건대,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생활수
준, 청구인이 희망하는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지급하여야 할 과거 양육비의 합
산액을 480,000,000원(= 2,000,000원 × 240개월)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거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2. 2. 14.

재판장 판사 김상국

 판사 김영하

 판사 이준영